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3.



고 명 옥 의원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고명욱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제반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제5호에서 제9호까지는 옐로카펫,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안전지킴이 등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실태조사 시 개선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내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제3조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 안 제8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서는 공사시행자의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교통안전지킴이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등·하굣길 안전교육 시 예산지원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3월 3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어린이 보호 및 제반 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보행권과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명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3021
----------	----------

발의일자: 2023. 3. 3

발 의 자: 고명욱, 박종길, 임미연, 박정환,
김장관, 남현주, 권숙자, 황국주,
이진환, 최홍린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제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추가 신설(안 제2조제5호~제9호)
- 나. 실태조사 시 개선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
- 다. 어린이 통학로 내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신설, 현행 제3조제3항 삭제)
- 라. 공사시행자의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안 제8조제2항제2호~제3호 신설)
- 마. 교통안전지킴이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제3항)
- 바. 등·하굣길 안전교육 시 예산지원 사항 추가 규정(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 「교통안전법」 제3조, 제18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엘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발광형 표지병”이란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악천후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보행안전지킴이”란 통학생이 자택에서 학교시설까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동행·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학부모 및 어린이의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안전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시
3. 옐로카펫,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
4. 보호구역내 CCTV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기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중전의 제8조의2)의 제목“(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를“(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행안전지킴이 등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행안전지킴이 등의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중전의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2”를 “제5조, 제10조”로, “등·하굣길”을 “등·하굣길 안전교육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6조(안전시설 설치) ① 구청장

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시

3. 옐로카펫,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

4. 보호구역내 CCTV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기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p>제7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생략)</p> <p><신설></p> <p><신설></p> <p>2. ~ 6. (생략)</p>	<p>제8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u></p> <p>3. <u>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u></p> <p>4. ~ 8.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제8조 (생략)</p>	<p>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p>
<p>제8조의2(<u>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u>)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10조(<u>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행안전지킴이 등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u></p> <p>③ <u>제2항의 보행안전지킴이 등의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u></p>

<p><u>제8조의3</u>(예산지원) 구청장은 <u>제8조의2</u>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u>등·하굣길</u>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제11조</u>(예산지원) ----- <u>제5조</u>, <u>제10조</u>----- ----- 등· <u>하굣길 안전교육</u> 또는 ----- ----- ----- ----- 1. ~ 4. (현행과 같음)</p>
---	--

[관 계 법 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도로관리청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시장등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공사현장”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 또는 대수선,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 공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통학로의 관리를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3.>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④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시

장 등이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 등의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애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의3(예산지원) 구청장은 제8조의2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봉사단체 등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3. 교통봉사단체 등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4. 교통봉사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통질서 계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및 기타경비